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0. 8. 14.>

면제확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5일
신 청 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업자	제조국명	
	회사명	
대상제품	제품명	모델명
	제품정격	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
	수량	금액
사용장소		
면제내용	안전인증[ ], 안전확인신고[ ],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[ ]	

면제확인 신청 사유 (해당조문 1개에만 ∨체크)

① 학교,연구소 연구개발용( ) ②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( )
③ 제조업체 연구개발용( ) ④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( )
⑤ 제품시험 목적용( ) ⑥ 기타( )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제1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,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.

※ 유의사항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,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 설명서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확인 및 결재	→	면제확인서 작성	→	면제확인서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면제확인기관)		처리기관 (면제확인기관)		처리기관 (면제확인기관)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